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규정

전문제정 2019.05.22. 개정 2023.05.3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개정 2023.05.3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수 · 학습 방법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교육매체 제작활용에 관한 기획, 연구·개발, 자문에 관한 사항
3.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제반 연수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코칭 및 학생상담기법 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3조 (조직)

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한다. 센터에는 센터장과 연구 및 개발 업무를 지원하고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제4조 (센터장)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6조 (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9.05.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되었던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 칙(2023.05.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